

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3-139호

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(등기)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(송달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3년 12월 1일

방송통신사무소장

1. 공고사유: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2. 공고기간: 2023.12.01. ~ 2023.12.14.(14일)
3. 공시송달 대상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
1	김희성	1969.00.28.	0178220274100002510	₩3,862,500	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소미길
2	강남규	1987.00.14.	0178200274100004271	₩2,457,000	세종특별자치시 새롬중앙로
3	변윤영	1974.00.17.	0178200274100004979	₩31,860,000	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 대로
4	최성규	1971.00.05.	0178200274100007397	₩4,914,000	대전광역시 동구 동부로 10 번길
5	원호민	1973.00.10.	0178200274100004290	₩8,780,400	충남 공주시 유구읍 서모곡길
6	원유자	1966.00.20.	0178200274100004907	₩10,620,000	충남 공주시 중앙 2 길
7	황진하	1974.00.13.	0178200274100004932	₩47,790,000	충남 천안시 서북구 서부 8 길
8	박재귀	1962.00.28.	0178200274100004941	₩22,302,000	대전광역시 서구 용화 4 길
9	최정민	1985.00.10.	0178200274100004943	₩47,790,000	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
10	이우재	1965.00.08.	0178200274100004939 0178200274100004944	₩1,770,000 ₩5,310,000	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15 번길
11	최광순	1955.00.26.	0178200274100004922	₩31,860,000	충남 천안시 서북구 군동 2 길
12	최영식	1948.00.22.	0178200274100001257	₩5,000,000	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
13	이선의	1978.00.18.	0178200274100003758	₩13,381,000	충남 태안군 원북면 옥파로
14	오세영	1983.00.11.	0178200274100004909	₩10,620,000	충남 서산시 동헌로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
15	신규완	1952.00.15.	0178200274100004900	₩8,850,000	인천광역시 서구 신진말로 33 번길
16	구기현	1952.00.15.	0178200274100004957	₩22,302,000	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서길
17	박남혁	1981.00.28	0178200274100004895	₩26,550,000	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중앙로 33 번길
18	정백진	1965.00.02	0178200274100004898 0178200274100003420	₩6,6737,500 ₩25,350,000	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 2 길
19	주식회사 누리텔	160111-0534902	0178200274100010330	₩5,302,500	대전광역시 동구 은어송로 100, 5 단지 503-405

4. 문의: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(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, 6층 ☎ 042-347-2103, 2106)
5. 공고내용: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6. 납부방법: 인터넷지로(giro.or.kr) 또는 NTR POPCON(ntrpopcon.go.kr), 모바일앱(NTR POPCON)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(수납기관 :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)
7. 가산금 및 증가산금 등 안내
 - 가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%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,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.2% 증가산금(重加算金)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.
 - 나. 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, 가산금 3%와 증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%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.
 - 다.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,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국세징수법」 제24조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.
 - 라. 또한,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,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